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35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3월 1일

3·1절에 생각하는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무단 합사 철회 소송

남상구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1. 머리말
2. 누가, 언제 소송을 했나?
3. 왜, 소송을 했나?
4. 야스쿠니신사는 어떤 곳이기에?
5. 일본 정부가 저야 할 책임이란?
6. 일본 법원 판결은?
7. 맺음말

3·1절에 생각하는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무단 합사 철회 소송

남상구_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1. 머리말

2010년 8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일본의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3·1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로 인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일본의 많은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도 일본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3·1운동을 탄압했다고 기술돼 있다.



마니비사, 중학교 역사교과서(2020년 검정통과, 현재 사용 중)

3·1운동을 주도했다가 희생된 사람들은 해방 후 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다. 그 가운데 1명이 조진탁(曹振鐸)이다. 1919년 3월 4일 평안남도 대동군 금제면 원장리 장날에 약 3,000명이 독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사천 헌병주재소는 일본인 헌병과 조선인 헌병보조원을 출동시켜 총을 쏘며 진압했다. 일본의 무력 진압에 13명이 순국하고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자 분노한 군중은 헌병 1명과 보조원 3명을 살해했다. 일제는 살해 혐의로 조진탁을 체포하여 1922년 10월 17일 평양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했다. 한국 정부는 1963년 조진탁에게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했다.

한편, 살해당한 헌병보조원 강병일(姜炳一), 김성규(金星圭), 박요섭(朴堯燮)은 1921년 4월 27일 실시된 제42회 야스쿠니신사 임시 대제에서 일본 군인들과 함께 동 신사에 ‘일본을 위해 싸우다 죽었다’는 명목으로 합사됐다. 합사란 여러 사람을 함께 신으로 모시는 것을 말한다. 2006년 9월 12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3.22 공포)에 따라 이들 헌병보조원 3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나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야스쿠니신사는 지금도 이들을 ‘일본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했다고 신으로 떠받들고 있다. 이러한 곳에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었다가 희생당한 한국인 약 21,000명이 유족의 동의도 없이 합사됐다. 앞에서 언급했던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자도 63명이나 된다. 일본에 의해 강제 동원됐다가 희생당한 피해자와 일본의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했던 친일파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은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소했다.

2. 누가, 언제 소송을 했나?

야스쿠니신사 무단 합사 철회 소송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합하여 지금까지 5건이 제기됐다.

원고는 야스쿠니신사에 아버지와 형제의 이름을 동 신사의 모든 명부에서 삭제하고, 더는 신으로 모시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하여 합사에 협력한 것을 사죄하라고 항의했다. 제기된 소송 5건 중 4건은 기각



출처: 『연합뉴스』 2014년 7월 9일

됐다. 오사카·오키나와 법원에 제소된 2건의 소송은 일본인 유족이 제기한 것으로 일본인 가운데도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국인이 제기한 소송 3건 중 1건은 대법원에서, 1건은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됐으며, 1건은 금년 5월 26일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제소 연월	제소 법원	원고	판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2001.6	도쿄지방법원	한국인 유족 416명	기각 (2006.5)	기각 (2009.10)	기각 (2011.12)
2006.8	오사카지방법원	일본인 유족 8명	기각 (2009.2)	기각 (2010.12)	기각 (2011.12)
2007.2	도쿄지방법원	한국인 유족 10명, 생존자 1명	기각 (2011.7)	기각(종결) (2013.10)	
2008.3	오키나와지방법원	일본인 유족 5명	기각 (2010.10)	기각 (2011.9)	기각 (2012.6)
2013.10	도쿄지방법원	한국인 유족 27명	기각 (2019.5)	진행 중	

3. 왜, 소송을 했나?

야스쿠니신사 홈페이지를 보면, 야스쿠니신사의 목적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업적을 후세에 전달하는 것”으로, 당시 ‘일본인’으로 전쟁에서 돌아가신 타이완과 한반도 출신자도 신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3·1운동을 탄압하다가 민중에게 살해당한 헌병보조원도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희생이 된다.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어 희생당한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다.

2013년 10월 23일 도쿄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시 국회 답변에서 찾을 수 있듯이 전쟁에서 순직한 자 또는 그 유족이 피항소인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바라고 있었다고 충분히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유족이 야스쿠니신사 합사를 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유족으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유족들은 2013년 10월 22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강제로 빼앗기고, 죽음에 슬픔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인생을 강요당한 원고들에게 그 침략전쟁의 정신적 지주이자 침략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사랑하는 아버지·형제가 합사된 것은 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고 고인형 씨¹가 일본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야스쿠니신사 소송 원고 고인형 씨
사진 제공: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그런데 아버지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합사제’라는 도장을 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니라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동원되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에게 ‘너희 아버지는 일본군이었지?’라는 말을 듣고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은 끝없는 불명예입니다. 가족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애초에 의논도 하지 않고 멋대로 합사한 것은 굴욕이라 고백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지금 상태라면 제 아버지는 일본군에 지원한 것이며, 또 전범으로 모셔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유족이 모셔지기를 바란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유족으로서 참을 수 없으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4. 야스쿠니신사는 어떤 곳이에요?

1869년에 세워진 야스쿠니신사는 처음에 메이지유신 과정에서 사망한 정부군을 제사지내고 현창하는 시설이었으며,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는 침략전쟁에서 사망한 일본군이 그 대상이 됐다. 그런데 야

1 원고 고인형 씨의 아버지 고몽찬 씨는 1920년 6월 22일생으로, 1942년 3월 육군 군속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4년 9월 뉴기니에서 사망했다. 야스쿠니신사는 유족에게 통보도 없이 1959년 4월 일방적으로 합사했다.

스쿠니신사는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시설이 아니라 최고 통수권자인 대원수(大元帥)이자 ‘살아 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천황이 참배하는 곳이었다. 국민에게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천황이 직접 참배하는 신사에 신으로 모셔지니, 이보다 더한 영광은 없다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에 따라 국민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야스쿠니신사의 역할이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야스쿠니신사가 왜 문제인지를 살펴보겠다.

첫째,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시설이다. 1875년 9월에 벌어진 일본의 강화도 군사 행동(운요호사건)부터 1910년까지 한국 침략전쟁에서 사망한 일본 군인과 경찰은 299명이다. 야스쿠니신사가 편찬한 『야스쿠니신사 충혼사』를 보면, 1906년에 일어난 의병항쟁을 “약 1,000여 명의 비도(匪徒)가 반란을 기도했다. (중략) 우리 주차(駐紮) 헌병 2명이 살해됐다. 따라서 6월 상순 대구와 원주에서 진위대(鎭衛隊)가 나가서 이 적(賊)을 구축(驅逐)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야스쿠니신사는 일관되게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지키려 했던 의병을 ‘비도’나 ‘적’, ‘서적(鼠賊)’으로 비하하고, 한국을 침략하다 살해당한 일본 군경은 ‘비도 토벌 작전의 고귀한 희생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일본군 부대

출처: 야스쿠니신사 임시 대제 위원, 『야스쿠니신사 임시 대제 기념 사진첩(靖國神社臨時大祭記念寫真帖)』, 1940년 4월

둘째, 야스쿠니신사는 한국인을 침략전쟁에 동원하는 수단이었다. 일본은 1937년 중국을 침략한 이후 전쟁이 확대되자 부족한 병력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인을 동원하려 했다. 하지만 의병전쟁에 대한 기억과 중국에서 활약하는 독립군들의 활약상으로 인해 쉽지 않았다.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려면 한국인이 '일본 군인이 되어 전쟁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영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했다. 이를 위해 동원된 수단이 야스쿠니신사였다.

조선총독부는 신문을 이용하여 한국인도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선전했다. 유족에게는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됐으니 죽음을 명예로 받아들여도록 강요했다. 교과서를 통해서도 일본인으로 태어나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한국인도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진정한 일본인이 될 수 있다고 교육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한국인 유족이 감격했다고 선전하는 '매일신보' 기사(1942.3.29.)

셋째, 야스쿠니신사는 지금도 일본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 총리는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지금도 일본 정부의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일본이 잘못된 국가정책에 따라 이웃 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것을 정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야스쿠니신사였다. 하지만 야스쿠니신사는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일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의병 등에게 살해당한 자도, 강제로 동원되어 희생당한 한국인도 일본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희생이 된다.

전시실 15 大東亞戦争

第二次世界大戦後の各国独立

日露戦争の勝利は、世界特にアジアの人々に独立の夢を与え、多くの先覚者が独立、近代化の模範として日本を訪れた。しかし、第一次世界大戦が終わっても、アジア民族に独立の道は開けなかった。アジア民族の独立が現実になったのは、大東亜戦争緒戦の日本軍による植民地権力打倒の後であった。日本軍の占領下で一度燃え上がった炎は、日本が敗れても消えることなく、独立戦争などを経て民族国家が次々と誕生した。

<p>インド チャンドラ・ボース (1897~1945) ビハリ・ボース (1886~1945) ガンジー (1869~1948) ハッタ (1902~80) スカルノ (1901~70)</p>	<p>フィリピン リカルテ (1868~1945) アギナルド (1869~1964) ラモス (1893~1945) ラウレル (1891~1959)</p>	<p>ミャンマー(ビルマ) バ・モウ (1893~1977) オン・サン (1915~47) ウ・オックマ (1879~1939)</p>	<p>ラオス</p>	<p>マレーシア</p>	<p>バングラデシュ</p>
<p>ベトナム クオン・デ (1882~1951) ファン・ボイ・チャウ (潘佩珠) (1867~1940) ホー・チ・ミン (胡志明) (1890~1969)</p>	<p>スリランカ</p>	<p>ブルネイ</p>	<p>シンガポール</p>	<p>カンボジア</p>	<p>パキスタン</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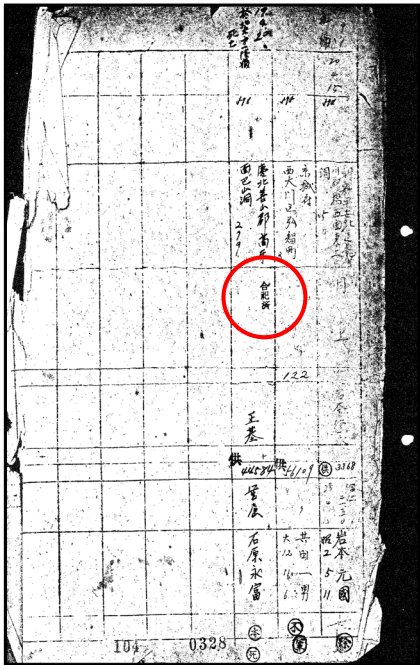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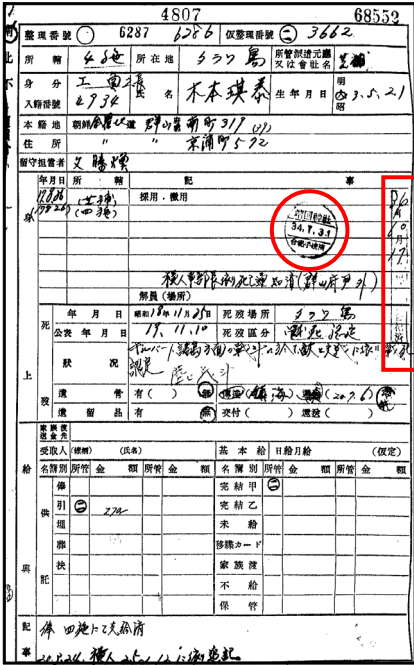


야스쿠니신사 부속 전시관 유슈칸의 전시 패널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 독립>을 보면, 마치 일본이 아시아 각국의 독립에 기여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며, 한국과 타이완은 독립한 국가 지도에서 빠져 있다. 출처: 야스쿠니신사『유슈칸 도록(遊就館図録)』2008년

5. 일본 정부가 저야 할 책임이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은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이 1976년 발간한 『야스쿠니신사 문제 자료집』에 따르면 20,636명, 『도쿄신문』 1995년 8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21,181명이다. 그런데 일본 패전 후 한국인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생사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조사²에 따르면 60명이 살아 돌아왔음에도 엉뚱하게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됐다.

1945년 해방과 함께 한국인들은 국적을 회복했다. 일본 패전 후 야스쿠니신사를 관리했던 육군성과 해군성은 해체되고 동 신사는 종교법인이 됐다. 새로 만들어진 일본 헌법은 국가가 종교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일본 정부는 육군성과 해군성의 업무를 인계받은 후생성 관계자들을 야스쿠니신사 합사 대상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시켜 한국인 합사 문제를 협의했다.

유수명부	해군군속신상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그라미 : 합사제(야스쿠니신사 합사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그라미 : 야스쿠니신사 1959.7.31 합사 수속 완료 • 네모 : 1959년 10월 17일 합사 완료

일본 정부가 한국인 야스쿠니신사 합사 관련 정보를 기재한 문서

출처: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편, 2007,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 경위 및 합사자 명부 진상조사』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편,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 경위 및 합사자 명부 진상조사』 2007.

1958년 4월 9일 야스쿠니신사에서 개최된 ‘제4회 합사 기준에 관한 검토회’를 보면, 인양원호국 복원 과(구 육군) 2명, 업무2과(구 해군) 2명, 야스쿠니신사 5명이 참석했다. 인양원호국은 “조선·타이완 출신자를 쇼와 34년(1959) 4월에 합사할 수 있도록 명부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58년 제7회 ‘합사 관련 검토회’에서는 향후 합사자 수에 대해 구 육군은 “조선인·타이완인 2만 명”, 구 해군은 “1959년 10월 조선인·타이완인 8천 명, 1960년 4월 조선인·타이완인 1만 2백 명”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야스쿠니신사는 후생성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합사를 진행했는데, 후생성이 제공한 한국인 자료는 20,692명분이었다. 연도별로는 1959년 19,650명, 1964년 82명, 1972년 66명, 1973년 385명, 1975년 509명 등이다.

일본 정부는 재판에서 합사는 야스쿠니신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야스쿠니신사는 후생성이 전쟁에 의한 ‘공무사’로 인정한 사람만을 합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전쟁으로 인한 공무사에 해당하는지는 야스쿠니신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고, “구 후생성 인양원호국에 협력을 요청하여 그 회답자료를 토대로 합사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협력 없이 한국인 합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는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가 하나가 되어 추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 유족들에게 야스쿠니신사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족에게 전사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인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고 무겁다.

6. 일본 법원 판결은?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 4건은 모두 기각됐다. 현재 진행 중인 1건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일본 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종교적 관용’이다.** 1988년 6월 1일 일본 대법원은 야마구치 호국신사 자위대원 합사 소송³ 판결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타자의 신앙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관용적이어야 한다며, 타자의 종교 행위로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법으로 보호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1년 7월 도쿄지방법원은 “한국 국적을 가진 원고들이 식민지 시대에 일본국에 징병·징용되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터에 나가 사망한 자의 유족임을 감안할 때, **피고 야스쿠니신사에 의한 본건 합사 행위 등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원**

3 1968년 1월 12일 순직한 자위대원을 자위대원 OB조직이 유족의 의사에 반하여 야마구치현 호국신사에 합사한 것에 대해, 유족인 부인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합사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했다.

고들의 역사 인식 등을 전제로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1988년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야스쿠니신사가 유족의 아버지와 형제를 친일파, 한국을 침략하다 살해당한 자, 침략전쟁 주범인 A급 전범 등과 함께 ‘일본을 위해 싸우다 죽은 영령’으로 떠받드는 것은 유족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재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일본인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전쟁에 끌려간 것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나라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한국을 빼앗을 때 저항하던 한국인들을 학살한 수많은 일본인도 합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들이야말로 한국인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고통 속에 살게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어째서 이들과 제 아버지를 일본을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죽은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원고 이명구 씨⁴ 진술서



야스쿠니신사 소송 원고 이명구 씨
사진 제공: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그런데도 일본 법원은 유족에게 ‘종교적 관용’을 내세워 참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둘째는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와 한국인 합사 추진을 협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행정적 조치라는 것이다. 야스쿠니신사조차 일본 정부의 협력 없이는 합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일본 법원은 합사를 야스쿠니신사가 스스로 교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한 종교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4 원고 이명구 씨의 아버지 이낙호 씨는 1914년 8월 13일생으로, 1944년 1월 20일 육군 군속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4월 12일 팔라우에서 사망했다. 야스쿠니신사는 유족에게 통보도 없이 1959년 4월 일방적으로 합사했다.

7. 맺음말

우리 헌법은 9차례 바뀌었고, 전문은 4차례 바뀌었다. 그래도 전문은 언제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시작한다. 올해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은 104주년을 맞는다. 광복 78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인 약 21,000명이 지금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있다. 야스쿠니신사는 3·1 운동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가 민중에게 살해당한 자들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으니 신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 침략전쟁을 주도했던 A급 전범이 합사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유족은 합사가 철회되지 않는 한 일본의 식민 지배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버지와 형, 오빠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싸움이 언제까지 이들만의 싸움이어야 할까. 이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는 3·1 절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남상구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일본 근현대사를 전공하였고, 최근 연구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식민지 피해-야스쿠니 신사 문제』(동북아역사재단, 2020), 『식민청산과 야스쿠니』(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